

자발적협약 회수·재활용 운영기준

제정 2008년 04월 01일
개정 2009년 02월 23일
개정 2010년 01월 25일
개정 2014년 02월 24일
개정 2015년 02월 24일
개정 2019년 02월 18일

제 1조(목적) 본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결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08.30개정)

제 2조(자발적협약의 참여자격 및 취소) ① 참여업체(제조사)는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하 협약체결자라 한다) 회원사로 한다. (2010.01.25 개정) (2014.02.24개정)

② 협약체결자의 회원사가 아니라도 본 기준에 동의하고 참여 약정서, 자발적 협약 이행 약속서, 5년간 판매실적(세무확인서) 제출하고 본 기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마치고 운영위원회 승인을 득한 경우 ①항과 동일한 자격으로 참여 한 것으로 한다. (2009.02.23 개정) (2010.01.25 개정) (2014.02.24개정)

③ 난연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첨가제 종류, 수량 및 공법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9.02.23 개정)

④ 건설용 발포폴리스티렌 품목의 자발적 회수·재활용에 참여 약정서는 <별표 1> “건설용 발포폴리스티렌 회수·재활용 시설 보유 현황, 건설용 발포폴리스티렌 자발적협약 회수·재활용 참여약정서”, 자발적협약 위·수탁 계약서(제조사용, 재활용사용)과 같다. (2010.01.25 개정) (2014.02.24개정) (2015.02.24개정)

⑤ 협약체결자는 협약 참여와 탈퇴의사를 제한 할 수 없으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예외로 한다. (2010.01.25 개정)

⑥ 임의로 탈퇴하거나 의무의 해태로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가입기간에 부과된 경비와 부과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제 3조(참여자의 의무) ① 생산과 판매량을 협약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약체결자가 부과하는 건설용 발포폴리스티렌 품목의 회수와 재활용 의무량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4.02.24개정)

③ 참여업체가 판매하지 않은 건설용 발포폴리스티렌 품목이라도 협약체결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회수 하여야 한다. (2010.01.25 개정) (2014.02.24개정)

④ 참여업체가 의무를 해태하여 협약체결자가 부과하는 벌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2014.02.24개정)

제 4조(벌칙) ① 자발적 회수재활용에 반하는 참여자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한다.

② 벌칙은 경고 및 당해 참여자의 의무해태로 발생한 사안 처리의 소요경비 부과와 제명으로 한다.

③ 벌칙은 제 6조에 의한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며 벌칙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명자는 관계당국에 법적조치를 취한다. (2014.02.24개정)

제 5조(심의 의결과 집행 기구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용 발포폴리스티렌 품목의 회수·재활용의 효과적인 자발적협약 실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010.01.25 개정) (2014.02.24개정)

② 운영위원회의 합법적 의결사항 집행은 협약체결자의 이사장 지휘를 받아 전무이사 책임하에 총괄팀에서 수행한다. (2014.02.24개정)

③ 협약체결자의 감사는 집행의 일체를 감사하여야 한다.

제 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협약체결자의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협약체결자의 대표이사가 맡는다.

③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할 수있다.

제 7조(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 ① 참여자의 5인 이상이 발의한 안건과 환경부 운영지침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협약체결자의 사무국이 발의한 안건을 심의한다

② 발의일 7일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심의 한다.

③ 의결은 과반수로 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8조(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참여자의 가입자격 및 자격 개시 (2010.01.25 개정)

가. 협약체결자의 회원이 아닌 경우 참여조건 (2010.01.25 개정)

나. 협약체결자의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자의 참여와 조건 (2010.01.25 개정)
(2014.02.24개정)

다. 협약시행 3차년도부터 신규가입자의 가입비의 결정과 총회부의 여부의 결정 (2010.01.25 개정)

라.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의 위반과 허위서류 제출 및 업무의 방해가 발생한 참여자에 대한 참여자격 해지 및 정지에 관한 일체의 조치 (2010.01.25 개정)

② 자격해지자의 재가입 (2010.01.25 개정)

가. 자격이 해지된 경우 최소 1년 이내에는 재가입을 심의 할 수 없다. (2010.01.25 개정) (2014.02.24개정)

나. “가”항의 제외업체라도 보고의무를 1월 이상 연간 5회이상 해태를 한 경우와 연간 연속 3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는 단축적용 할 수 없다. (2010.01.25 개정)

다. 협약체결자를 비방하거나 악성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재가입 심의시 (2010.01.25 개정)

라. 협약체결자를 비방하거나 악성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재가입 심의시 대표이사 자연인 명의의 연대보증이나 각서를 요구 할 수 있다. (2010.01.25 개정)

마. 협약체결자가 부과한 자발적 협약 관련 직간접 부과금을 미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현금 공탁 등의 담보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납한 사실이 있는 법인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2010.01.25 개정)

③ 환경부와 협약한 목표율 달성을 위한 소요 경비에 관한 모든 사안과 참여자별 부과무율을 적용한 회수의무량 부과. (2010.01.25 개정)

④ 회수된 폐기물로 제조한 재활용제품 판매가격의 결정.

⑤ 참여업체와 재활용업체가 보고한 증빙자료의 진위조사 대상자 선정 및 그 결과의 조치 (2009.02.23 개정) (2014.02.24개정)

⑥ 기타 운영위원 5인 이상의 발의 안건 (2010.01.25 개정)

제 9조(실적의 관리 및 보고의무) ① 참여업체는 생산 및 판매량과 재활용업체는 회수·재활용을 협약체결자에 관리 신고하여야 한다. (2014.02.24 개정)

② 협약체결자는 참여업체의 신고실적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참여업체에 증빙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협약체결자는 ②항에 의한 자료를 검증 후 필요시 실적을 가감 조치할 수 있다. (2009.02.23 개정) (2014.02.24 개정)

④ 참여업체는 ③항에 의한 가감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환경부 지침에 의한 최종보고의무기간 (2월)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09.02.23 개정) (2010.01.25 개정) (2014.02.24 개정)

⑤ 협약체결자는 합성수지의 국내업체별 판매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합성수지 제조사에 판매

정보의 공개를 요청 할 수있다.

⑥ 협약체결자의 증빙자료 요청을 거절한 참여업체에 대하여는 자발적협약의 참여를 취소하고 즉시 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매월 제출의무 서류(제조, 회수·재활용)를 연속 3회 이상 연간 6회이상 해태한 참여자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 없이 참여자격을 해지 할 수 있다. (2010.01.25. 개정) (2014.02.24 개정)

⑧ 운영위원회는 본조의 원활한 효과를 위해 매분기 실적을 전체회의에 부의하고 필요시 ⑥항과 ⑦항을 시행한다.

⑨ 의무량을 재활용하지 못한 참여업체는 익년도 자발적협약을 가입을 제한 할 수 있다. 단, 환경공단의 실사 전 재활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2019.02.18. 개정)

⑩ 제출의무 서류는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익년도 자발적협약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019.02.18. 개정)

제 10조(납부의 의무) 분담금은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연체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명단을 공개하고, 익년도 자발적 협약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019.02.18. 개정)

제 11조(기타)

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협력체결자의 정관, 상위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효력의 발생)

① 최초시행에 동의 한 경우 제 8조 ①항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한다.

② 본 기준은 환경부와의 자발적 협약에 근거한 기간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